

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, 바람직한 관리방향은?

부채관리의 필요성

○ 현재의 채무 중심의 재정관리 체계 개선

- 재정관리 범위를 채무에서 부채로 전환하고 통합 및 우발부채를 포함하여 확대 관리가 필요하며, IMF, OECD 등 국제기구도 채무개념에서 발생기준에 따른 부채개념 통계작성 권고

○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 강화

-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사항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확정채무 및 BTL, 지급보증 등 잠재부채를 공개하여 재정위험요소에 사전적으로 대응

〈채무와 부채의 개념〉

- 채무(debt) :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부담의무
- 부채(liability) : 미래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
 - * 통합부채 : 자치단체 부채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함
 - * 우발부채 :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협약·보증으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(보증채무, 토지매입확약, 토지 리턴, BTO 재정지원 협약 등 우발사항)

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수준

○ 채무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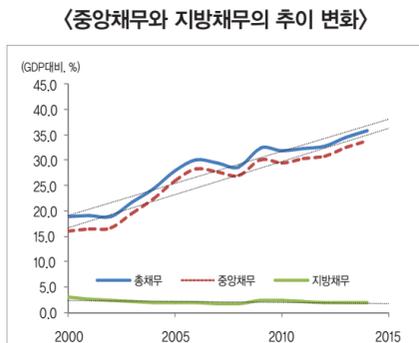
- 지방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였으나 최근 둔화('08년 19.0조 원 → '09년 26.8조 원 → '14년 28.0조 원)

〈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채무〉

(단위 : 조 원)

구분	2000년		2009년		2014년	
	금액	GDP대비 비율	금액	GDP대비 비율	금액	GDP대비 비율
국가채무 (중앙+지방)	119.8	18.9%	372.9	32.4%	531.1	35.7%
중앙정부채무	101.0	15.9%	346.1	30.1%	503.1	33.9%
지방채무	18.8	3.0%	26.8	2.3%	28.0	1.9%

〈중앙채무와 지방채무의 추이 변화〉



○ 부채수준

-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2014년도 지방총부채는 108.0조 원이며, '1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임
- * 지방정부 부채 : 58.6조 원(54.3%), 지방공기업 부채 : 49.4조 원(45.7%)

〈지방통합부채 현황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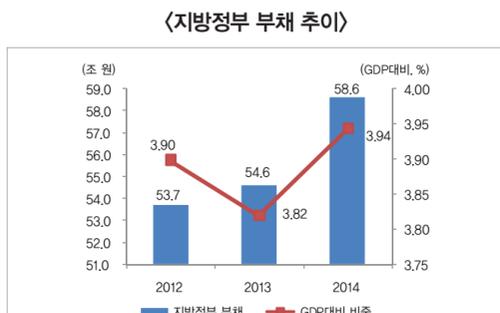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조 원)

구분	2012년	2013년(A)	2014년(B)	증감(B-A)
총부채	105.0	105.5	108.0	2.5
지방정부 부채	53.7	54.6	58.6	4.0
자치단체(회계·기금) ¹⁾	43.4	43.5	45.9	2.4
지방교육자치단체	9.9	10.8	12.2	1.4
비영리공공기관	1.1	1.1	1.2	0.1
비금융공기업(지방공기업)	51.3	50.9	49.4	-1.5
내부거래	▲0.6	▲0.8	▲0.8	0.0

주1)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비금융채무가 포함됨

자료 :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(기획재정부, 2015)를 기초로 재작성

〈지방정부 부채 추이〉



〈비금융공기업(지방공기업) 부채 추이〉



우리나라 부채통계 작성현황

○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, 일반정부 부채, 공공부문 부채 3종류의 통계 발표

-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·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며,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활용
-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추가해 국제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며, IMF,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돼 국가 간 비교에 활용
-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추가해 국제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며,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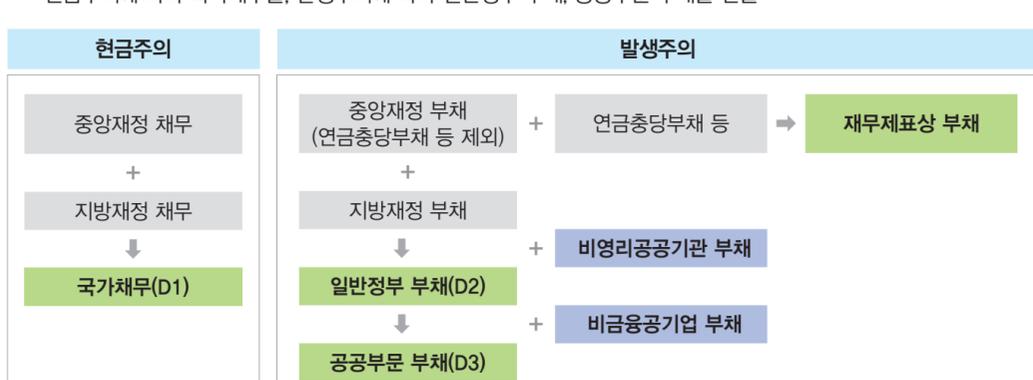
〈공공부문 부채 작성기준〉

구분	국가채무	일반정부 부채	공공부문 부채
포괄범위	중앙정부채무(회계·기금) 지방정부채무(회계·기금)	국가채무+비영리공공기관 부채 (중앙·지방정부)	일반정부부채+비금융공기업부채 (중앙·지방정부)
적용기준	GFS 1986(IMF)	GFS 2001(IMF)	PSDS 2012(OECD 등)
회계기준	현금주의 적용	발생주의 원칙	발생주의 원칙
제출기관	미제출	IMF	OECD

* 정부재정통계(GFS :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), 공공부문부채통계(PSDS :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)

○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지침(PSDS)에 따른 부채통계 산출

- 현금주의에 따라 국가채무를, 발생주의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,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



* 부채유형별 작성기준 : 기획재정부(2015)

자치단체 부채관리 강화 방향

○ 부채관리 범위와 세부기준 마련

- 통합부채를 구성하는 일반채무, 지방공기업부채, 비영리공공기관, 비금융공기업부채 등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재정위험예측, 중장기 지속가능성 판단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부채 관리범위 및 재정위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
- 우발부채의 경우 통합부채 범위에 포함하면서 유형별로 리스크평가/위험통제 세부기준 마련

〈부채관리 범위와 산출기준 마련〉

구분	대상회계(기관)	주요 내용	비고
일반채무	일반회계 등 중심	차입금, 지방채증권, 채무부담행위, 보증채무부담행위	지방재정정상 채무
관리채무	통합회계	일반채무+BTL+보증채무 이행 책임액-보증채무부담행위	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목적
부채 총계	통합회계	관리채무+총당부채+연금부채+ 기타발생주의 부채	복식부기 재무제표 내부거래 부채 제외
일반정부 부채	중앙정부, 지방정부, 비영리 공공기관	GFS 국제기준	IMF
공공부문 부채	일반정부, 비금융공기업	PSDS 국제기준	IMF, OECD,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
통합부채	통합회계, 공사공단, 출자 출연기관	통합부채, 지급보증, 약정체결 등 우발부채	출자지분, 원가보상을 등 검토

주 : 통합회계는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, 기금,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

○ 통합부채관리시스템 구축 및 부채통계의 체계적 관리

- 예산편성, 예·결산심의, 재정건전성관리에 활용되도록 채무, 통합·우발부채 내역공개
- 확정부채, 비확정부채(우발부채, 보증채무, 채무부담행위, 민자유치 정부부담, 예산외 의무부담) 및 지방공사·공단과 출자·출연기관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통합부채관리시스템 구축
- 별도로 관리되는 채무·부채 관련 통계를 지방채무(D1) → 지방부채(D2) → 통합부채(D3)로 관리
- 부채정보를 재정건전화관리, 재정위험예측 등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니는 재정회계지표와 측정 방법론 개발

▶ 내용문의 : 이효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02-3488-7323, hyo@krila.re.kr)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